

예산총칙

2017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368,447,412	11,053,422
일반회계	320,390,870	9,611,726
특별회계	48,056,542	1,441,696
기타특별회계	48,056,542	1,441,696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162,112	34,863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7,072,660	512,180
수질개선특별회계	10,094,727	302,842
농공단지조성관리특별회계	258,000	7,740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17,776,820	533,305
의료보호특별회계	251,092	7,533
주차장특별회계	56,476	1,694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1,296,283	38,888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	88,372	2,651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 과 같다.

제 3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 와 같다.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871,86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6,900,000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 및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